

택배서비스사업 등록 신청 공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5조제1항, 부칙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택배 서비스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안내에 따라 관련 서류를 2024년 8월 30일 18:00까지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2024. 4. 25.

국토교통부장관

1. 신청 대상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택배서비스사업을 하려는 자
2. 제출기한 : 공고일로부터 2024. 8. 30.(금) 18:00 까지
 - ※ 금년도 등록기한 내 상시 접수 가능하나, 심사는 6월, 9월에 각 1회 진행
 - ※ 6월 심사 희망 업체는 5월 24일(금)까지 서류 제출 요망
3. 제출서류 : 붙임 참조
4. 접수 및 문의 : 국토교통부 생활물류정책팀 또는 한국능률협회플러스
 - ① 국토교통부 생활물류정책팀
 - ☎ 044-201-4155
 - ② 한국능률협회플러스(택배서비스사업자 등록요건 충족 확인·조사 용역사)
 - ☎ 문의) dhchoi@kmac.co.kr
 - ☎ 02-3786-0502
5.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dhchoi@kmac.co.kr
 - ※ 금년도 등록에 필요한 증빙 제출서류 일체는 전자문서화하여 제출하여야 함
 - ※ 문의 및 서류 제출은 메일로 송부 바랍니다.

[붙임] 택배서비스사업의 시설·장비 및 영업점 등 등록기준(시행령 제2조제1항 관련)

구 분	등록기준
1. 영업점	5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30개소 이상의 영업점 또는 직영점을 갖출 것
2. 시설	가. 면적이 3,000㎡ 이상인 화물 분류시설 1개 이상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화물 분류시설을 갖출 것 나. 택배사업자가 화물 취급소를 영업점 및 직영점 개수 이상으로 설치할 것
3. 장비 등	가. 주된 사무소와 영업점, 직영점, 화물 분류시설 및 화물 취급소를 연계하는 화물운송전산망을 설치할 것 나. 영업점 또는 직영점에 배치되어 화물을 배송하는 화물자동차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물자동차를 100대 이상 확보할 것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택배운송용으로 허가를 받은 화물자동차 2) 다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화물자동차로서 택배서비스사업자, 영업점 또는 택배서비스종사자가 1년 이상 택배 운송에만 사용하는 화물자동차 다. 화물의 집화, 배송 등 생활물류서비스의 업무 위탁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32조에 따른 표준계약서에 기초하여 작성한 위탁계약서를 갖추고 있을 것

비고

1. 위 표에서 “직영점”이란 화물을 배송하기 위하여 택배사업자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곳을 말한다.
2. 제2호가목에서 “화물 분류시설”이란 시·도 간에 배송되는 화물을 분류하고 일시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3. 제2호나목에서 “화물 취급소”란 화물을 상하차(上下車)하고 이를 보관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제3호가목에서 “화물운송전산망”이란 화물의 운송 현황 등을 관리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말한다.
5. 제1호 및 제2호 각 목에 따른 영업점, 직영점, 화물 분류시설 또는 화물 취급소를 다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붙임2] 택배서비스사업자 등록요건 충족 확인을 위한 제출 서류

① 공통제출

-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사본
- 본사 법인등기부등본

② 시설 및 장비 구비 요건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

구분	기준	제출 증빙자료	비고
영 업 점		1. 본사와 영업점 간의 계약서 사본*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건물 등기부등본	자가 소유인 경우
		4. 임대차 계약서, 건물 등기부등본	임차 사용인 경우
		5. 공동사용 계약서**, 건물 등기부등본	공동 사용인 경우
		6. 전경 사진	
시 설	화물 분류시설	1.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자가 소유인 경우
		2. 임대차 계약서,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임차 사용인 경우
		3. 공동사용 계약서**,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공동 사용인 경우
		4. 전경 사진	
	화물 취급소	1. 건물 등기부등본	자가 소유인 경우
		2. 임대차 계약서, 건물 등기부등본	임차 사용인 경우
		3. 공동사용 계약서**, 건물 등기부등본	공동 사용인 경우
		4. 전경 사진	
장 비 등	전산망 시설	1. 전산장비 내역	
		2. 영업점, 분류시설, 취급소 전산코드	장비 유무 포함
		3. 전산시스템 운영매뉴얼	운송장 사본 포함
		4. 운영현황(홈페이지·앱 등 이용화면)	
	사업용차량	1. 자동차 등록증 사본***	앞장
		2. 용차계약서 및 위수탁계약서	
	위수탁계약서	1.택배 표준계약서에 기초한 택배사와 영업점, 영업점와 택배기사 간의 위수탁계약서****	

* 계약관계를 확인 가능한 부분(표지, 쌍방 날인 페이지 등)만 제출 가능

** 기준 시설을 공동사용하는 경우 건물주의 동의 입증서류 사본 반드시 첨부

*** 적재함 구조변경 내역이 자동차등록증에 표시되지 않은 경우 자동차등록원부(갑) 별도 제출

**** 택배사 - 영업점, 영업점 - 택배기사간 위수탁계약서 샘플 각 1부

※ 화물취급소와 영업점을 같이 운영하는 경우 화물취급소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증빙자료의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제출 회사에서 '원본대조필 확인'을 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의 유효성은 서류가 제출된 날짜를 기준으로 함

③ 작성양식 : 별지

- 별지 : 영업점, 화물분류시설, 화물취급소, 전산망 시설, 사업용 차량 확보 현황

※ 별지 서식은 엑셀파일로 작성하며, 증빙 첨부서류(날인 스캔본 등)와 함께 제출

시 설 현 황

‘24. 4. 현재

1. 영업점 현황(전체)																		
(회사명 :)																		
권역	영업점명	영업점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시,도)	주소	소유구분	공동사용	건물		연락처(소유자)	영업점연락처	배송기사(명)	보유차량(대)	일평균무시간	기사의산재보험가입자수(명)	일평균배송량(상자)	일평균집하량(상자)	기사의월평균수입(천원)
								소유자	임차자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대전																		
광주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충북																		
전남																		
전북																		
경남																		
경북																		
제주																		
세종																		

- ※ 첨부서류(30개소 이상)
1. 본사와 영업점 간 체결한 계약서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공동사용계약서 등 해당서류 1부
 4. 전경 사진 1부

4. 전산망 시설										
(회사명 :)										
위탁 운영 여부	전산 장비 내역	영업점 전산코드	분류시설 전산코드	취급소 전산코드	운영현황					기타
					전산망 화면	홈페이지 화면	홈페이지 주소	앱 화면	운송장 사본	
실시간 화물이력 추적 운영 현황										
구간	화주 집화	발송취급소 (대리점)	지역 분류장	거점 분류장	지역 분류장	도착취급소 (영업점)	도착화주	실시간 검색	고객 확인	
확인 가능 여부										

※ 첨부서류

1. 전산 장비 내역 1부 (전산장비 리스, 시스템 운영 위탁시 관련 계약서 포함)
2. 영업점·분류시설·취급소 전산코드(장비 유무 포함) 엑셀파일 1부
3. 전산망 운영매뉴얼 1부
4. 운송장 사본 1부
5. 홈페이지·앱 등의 회사용, 고객용 페이지 캡처화면 각 1부

※ 작성 기준(아래에 해당하는 사항을 숫자로 표기)

- 1 : 제출
- 2 : 미제출

5. 사업용 차량(전체)

순 번	소유 구분	차량 현황(자동차등록증 내용 기재)								실제 운전자 현황			
		소유자	주민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번호)	차명	자동차 등록번호	차종	연식	톤수	구조 변경	사용 본거지	성명	주민 번호	종사자격 유무
1													
2													
3													
4													
5													
6													
7													

※ 첨부서류(100대 이상)

1.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2. 용차계약서 및 위·수탁계약서 사본 1부

※ 소유구분 작성 기준 : 1.5톤 미만 배형, 탑장착차량인 사업용차량 기준이며, 아래에 해당하는 사항을 숫자로 표기

- 1) 택배회사 소유
 - (1-1) '배'번호
 - (1-2) '바사아자'번호 직접운영
 - (1-3) '바사아자'번호 지입운영
- 2) 택배회사 소유 외 (타 운송사업자 소속)
 - (2-1) '배'번호
 - (2-2) '바사아자'번호

※ 운송장 제작 시 참고사항 (택배표준약관 참조)

택배표준약관 제7조(운송장)

①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운송장을 마련하여 고객(송화인)에게 교부합니다.

1. 사업자의 상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담당자(집화자) 이름, 운송장 번호
(필수)

2. 운송물을 수탁한 당해 사업소(사업자의 본·지점, 출장소 등)의 상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운송물의 중량 및 용적 구분

4. 운임 기타 운송에 관한 비용 및 지급방법

5. 손해배상한도액

※고객(송화인)이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아니하면 제22조 제3항에 따라 사업자가 손해배상을 할 경우 손해배상한도액은 50만원이 적용되고, 운송물의 가액에 따라 할증요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각 운송가액 구간별 최고가액이 적용됨을 명시해 놓을 것

6. 문의처 전화번호(필수)

7. 운송물의 인도 예정 장소 및 인도 예정일

8. 기타 운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특급배송, 신선식품 배송 등)

② 고객(송화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운송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이를 다시 사업자에게 교부합니다.

1. 송화인의 주소, 이름(또는 상호) 및 전화번호(필수)

2. 수화인의 주소, 이름(또는 상호) 및 전화번호(필수)

3. 운송물의 종류(품명), 수량 및 가액(필수)

※ 고객(송화인)이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면 사업자가 손해배상을 할 경우 이 가액이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된다는 점을 명시해 놓을 것

4. 운송물의 인도예정장소 및 인도예정일(특정 일시에 수하인이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 특정 일시 및 인도예정일시를 기재함)

5. 운송상의 특별한 주의사항(훼손, 변질, 부패 등 운송물의 특성구분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함)

6. 운송장의 작성연월일(필수)